

디에이치 자이 개포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 정보 (분양문의) 1577-775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현행법상 3년에 해당하나 기산일이 최초당첨자발표일(2018.03.29.)이므로 제한기간 만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12.17.(수)	25.12.22.(월)	25.12.26.(금)	25.12.29.(월)	26.01.05.(월)

1 공통 유의사항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디에이치 자이 개포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5층 15개동 총 1,996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1세대 [특별공급 1세대(기관추천 1세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불법행위 재공급 아파트이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현재 견본주택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와 계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방문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시설물의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므로, 당사 현장방문 등으로 상품과 입지여건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서 당첨된 등·호수를 오픈할 예정이오니, 세대 방문시 상품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며, 미 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디에이치 자이 개포 분양 상담 전화(1577-7755)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9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사무실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17.(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30057**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3.14.(수)**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18000168**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역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25.12.22.(월)	25.12.26.(금)	25.12.29.(월)	26.01.05.(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 당첨자 대상 상세 주소 별도 안내 예정)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명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후 익월 10일까지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수입인지가격 15만원)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으나 기산일 기준 제한기간이 초과되어 해당없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전매제한기간	현행법상 3년에 해당하나 기산일이 최초당첨자발표일(2018.03.29.)이므로 제한기간 만료

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건축사업과-19284호(2025.12.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디에이치 자이 개포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5층 15개동 총 1,996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1세대 [특별공급 1세대(기관추천 1세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비고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계	
2025930057	01	084.0000P	84A	84.9400	23.0700	108.0100	70.6700	178.6800	31.9649	1	1	1	811동 2803호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	1
합 계		1	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1세대의 공급으로 해당 호수는 811동 2803호입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동 호	분양금액				계약금(20%)	잔금(80%)
			대지비	건축비	재분양비	계	계약시	입주시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
084.0000P	84A	811동 2803호	1,173,473,000	244,127,000	58,243,770	1,475,843,770	295,168,754	1,180,675,016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금액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기존 내용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추가 또는 취소 등의 개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 주택형의 구분은 건축물대장 표기이며, 상기 세대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통하여 확인하여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공급규칙 제47조제3항에 의거 공급총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 세대별 공급금액은 상기 기재된 금액으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 당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으로 주변 여건 및 해당 세대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무상옵선) 세부 내역, 금액(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주택형 (약식표기)	동 호	품목	내용	공급금액	합계	계약금(20%) (계약시)	잔금 (80%) (입주시 또는 잔금납부 만료일)
84A	811동 2803호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	26,280,000	33,980,000	6,796,000	27,184,000
		시스템에어컨	시스템에어컨	7,700,000			
		하이라이트 3구	하이라이트 3구	-			
		파우더	좌식	-			
		거실 바닥	폴리싱타일	-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대금 및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신한은행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아시아신탁(주)

- 납부 계좌는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 세대에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세대별, 납부 대금 유형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잔금도 해당 세대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계약금 20%, 잔금 80%로 나누어 납부하며, 잔금 80%는 실입주일 또는 키볼출일 중 빠른 날짜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잔금 납부 마감일 이후에는 아 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 요건에 따릅니다.
- 잔금은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2026.03.04(수)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그 전에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2026.03.04(수) 이후에는 미납 잔금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하며 아파트 및 발코니 확 장 계약,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연체료율 및 위약금은 아파트 공급 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및 유상옵선 계약서의 해당 사항에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공급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무상옵선) 관련 유의사항

- ※ 모든 옵션 품목의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침실 표기는 최초 분양 카탈로그 기준입니다.
-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 기구,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및 감지기)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질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유상옵선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잔금은 입주 시 세대 출입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납부 기일은 최대 계약 후 60일까지이며, 그 전에 입주할 경우 세대 출입 열쇠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열쇠수령일)부터는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4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 요건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추천기관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p>■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2.26.(금) ~ 2026.01.04.(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12.26.(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및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 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1.05.(월), 1일간, 10:00 ~ 14:00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 당첨자 대상 상세 주소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계약체결 서류제출 안내

- 모든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로 간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 및 제출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구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이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및 계약체결 구비서류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내 제출 / 공통서류 및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 무허가주택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 분양사무실에서는 현금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계좌이체확인서)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 분양사무실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증빙서류 포함)	-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일치해야함.
	○		정부수입인지	-	· 정부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영수증 출력 또는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대리인 제출, 계약시 추가 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 용도 : 자격확인서류제출 및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양식 : 분양사무실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상기 서류는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시행사 및 계약자가 과세 금액에 대해 균등 부담할 예정이며,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본 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p>검색대상 주택의 범위</p>	<p>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p>주택처분 기준일</p>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3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p>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p> <table border="1" data-bbox="291 1220 2027 1372"> <thead> <tr> <th>조항</th> <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주거전용면적</th>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 <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60㎡ 이하</td> <td>1억 6천만원</td> <td>1억원</td> </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 <td>단독주택</td> <td rowspan="3">85㎡ 이하</td> <td rowspan="3">5억원</td> <td rowspan="3">3억원</td> </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 </tr> </tbody> </table>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p>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2018.03.14.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확인 예정이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옥션)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20.2.21.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 3에 따른 불법행위 재공급 아파트이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 ※ 84A타입은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사다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며, 피난사다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시설, 지하주차장 등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 분	건 축	전 기	소방 및 정보통신
회사명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한일엠이씨
감리금액	6,129,711,500원	862,205,000원	788,040,000원

※ 감리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임.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현대건설개포컨소시엄		GS건설(주)	
법인등록번호	879-50-00323		110111-0007909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월동 611-1 외 4필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현대엔지니어링(주)	
			110111-21530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 분양관련 문의 및 사무실 위치 안내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 당첨자 대상 상세 주소 별도 안내 예정
- 분양문의 : ☎1577-7755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1:30~13:00) 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리스트(84A)

※ 해당 마감재 리스트는 착공 당시 기준으로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품 명		모델명		업체명	비 고	
1.수장공사	SHEET	메인시트		비닐시트래핑	YM403-J3		KCC	
	현관 복도/거실 /식당/주방	천장		국산 벽지	87088-2		개나리 벽지	
		벽	메인	국산 벽지	97328-1		개나리 벽지	
		바닥		원목	Oak Light Brown_ 오크라이트브라운		성창	
	침실1	천장		국산 벽지	87088-2		개나리 벽지	
		벽	메인	국산 벽지	97393-7		개나리 벽지	
		바닥		원목	Oak Light Brown_ 오크라이트브라운		성창	
	드레스룸	천장		국산 벽지	87088-2		개나리 벽지	
		벽	메인	국산 벽지	97393-9		개나리 벽지	
		바닥		원목	Oak Light Brown_ 오크라이트브라운		성창	
	침실2	천장		국산 벽지	87088-2		개나리 벽지	옵션:화습공간 강화형선택시 침실2벽지적용
		벽	메인	국산 벽지	T1061-1		LG벽지	
			포인트	국산 벽지	T1061-2		LG벽지	
		바닥		원목	Oak Light Brown_ 오크라이트브라운		성창	
	침실3	천장		국산 벽지	87088-2		개나리 벽지	
		벽	메인	국산 벽지	97340-2		개나리 벽지	
바닥		원목	Oak Light Brown_ 오크라이트브라운		성창			
욕실1 /욕실2	천장		PVC 천장	지정PVC 마감 (액사판)-KUV 553		상명엔프라		
실외기실 /발코니 /대피공간	천장		수성 페인트	지정 페인트 마감 (KCC / NA101 색상기준)		현장		
	벽		수성 페인트	지정 페인트 마감 (KCC / NA101 색상기준)		현장		
	바닥		에폭시	지정 에폭시도장 마감 (KCC JC0013 색상기준)		현장		
2.몰딩	거실/주방 /침실전체	천장몰딩	메인	시트래핑	도면참조 35*15 몰딩 (KCC / S0062-C9D 색상기준)		현장	
			드레스룸 / 펜트리	시트래핑	도면참조 45*15 몰딩 (KCC / S0062-C9D 색상기준)		현장	
			우물천장	시트래핑	도면참조 (KCC / S0062-C9D 색상기준)		현장	
	걸레받이		비닐시트래핑	도면참조 H=80mm (비닐시트 : KCC / YM403-J3)		현장		
3.타일석재	현관	바닥	디딤판	천연 화강석	카페 임페리얼		민성	
			바닥	천연 화강석	레논		민성	
		걸레받이		천연 화강석	레논		민성	
	거실	아트월		대리석	모카우드		민성	
		바닥		외산타일	EPK60RC109	600*600	캠텍	
	주방/식당	상하부장 사이 벽체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KSQ-802 샌즈스톤		KCC	
		주방 상판(기본형)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KSQ-802 샌즈스톤		KCC	
		주방 상판(확장형)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KSQ-802 샌즈스톤		KCC	
	복도	복도장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KSQ-802 샌즈스톤		KCC	
	드레스룸	파우더 상판		천연화강석	블랑코머핀		민성	

	욕실1 (공용욕실)	벽	메인	외산타일	CAESAR(IT) / FAROSTR	297*596	아이에이		
		비누턱상판		천연화강석	임페리얼브라운		민성		
		바닥		외산타일	CAESAR(IT) / FAROSTR	297*297		아이에이	
		코너비드		국산	CSA-1050-1 (진페르가문)		참스라인		
		도어 SILL		인조대리석 (MMA)	C-08 센트라 밀키웨이		KCC		
	욕실2 (부부욕실)	벽	메인	외산타일	CAESAR(IT) / MASON BLANC	300*600	희만유통		
		비누턱상판		천연화강석	비양코엔틱코		민성		
3.타일석재	욕실2 (부부욕실)	바닥		외산타일	CAESAR(IT) / MASON BLANC	300*300	희만유통		
		코너비드		국산	CSA-1050-1 (진페르가문)		참스라인		
		도어 SILL		인조대리석 (MMA)	C-08 센트라 밀키웨이		KCC		
		샤워부스 하부 SILL		인조대리석 (MMA)	센트라 그레이 쿼츠		KCC		
	발코니 1,2	바닥		국산타일	DF 4294		대동		
		상판		인조대리석 (MMA)	C-12 센트라라이스		KCC		
SILL		인조대리석 (MMA)	센트라 그레이 쿼츠		KCC				
4.창호공사	목창호	도어	침실1	비닐시트래핑	도면참조 (비닐시트 : KCC / YM403-J3)		MH: 현장시공		
			침실2,3	비닐시트래핑	도면참조 (비닐시트 : KCC / YM403-J3)		MH: 현장시공		
			욕실1(공용욕실)	ABS	도면참조 ABS 시트 마감 (비닐시트 : KCC / YM403-J3)		MH: 현장시공		
			욕실2(부부욕실)	ABS	도면참조 ABS 시트 마감 (비닐시트 : KCC / YM403-J3)		MH: 현장시공		
	슬라이딩도어	도어	중문 슬라이딩도어	금속+유리	유리: 글라스닛시 / DIS-001 프레임, 하부레일 : KCC F-3162		아린	확장시 제공	
		복도	문틀	비닐시트래핑	인테리어 도면참조, 지정 시트마감 (비닐시트 : KCC / CP002)		현장		
	내부/ 외부 샤시	PVC창호 (비닐시트래핑)		PVC(래핑)+유리	도면참조 (비닐시트 : KCC / YM403-J3)		KCC		
		주방창호 (비닐시트래핑)		PVC(래핑)+유리	도면참조 (비닐시트 : KCC / M0030B4)		KCC		
	PVC 터닝도어	실외기실	도어(전면)	PVC(래핑)	PVC 터닝도어 (비닐시트 : KCC / YM403-J3)		KCC		
			도어(후면)	플레이트도어 (분체도장)	PVC 터닝도어 (KCC / NA101 색상기준)		KCC		
			문틀(전면)	비닐시트래핑	도면참조 (비닐시트 : KCC / YM403-J3)		KCC		
			문틀(후면)	도장	도면참조 (KCC / NA101 색상기준)		KCC		
	방화문	세대현관문	도어	컬러강판	도면참조 (MCM SP201/E 컬러강판)/ MCMBEAD색상컬러강판로고에칭		MH: 현장시공		
			문틀	도장	도면참조 (색상:도어기준)		MH: 현장시공		
도어부속물	안방(침실1)		레버형손잡이	DHM-5441 DN		대흥건설			
	침실2,3/욕실1,2		레버형손잡이	DHP-5441 DN		대흥건설			
	침실1,2,3 / 욕실1,2		정첩	HKM-SS3K4035 SS		대흥건설			
	침실1,2,3/욕실1,2/실외기실		도어스토퍼	AL(일자형)		대흥건설			
5.가구공사	일반가구	현관	신발장 (일상화수납)	프레임	도면참조 (지정 PET) : 한화 / GY01DE3		리바트		
				도어	도면참조 (지정 PET) : 한화 / GY01DE3		리바트		
				손잡이	도면참조 (지정 금속찬넬) : ASH-06번 컬러		리바트		
				BODY	도면참조 (지정 LPM) : 동화 / DW-H-3115		리바트		
			현관창고	프레임	도면참조 (지정 PET) : 데코벨리 / D-1002		리바트		
				FIX판넬,도어	도면참조 (지정 PET) : 데코벨리 / D-1002 +CNG/ES-B05-3+3T브론즈경		리바트		
손잡이	도면참조 (지정 금속찬넬) : ASH-06번 컬러			리바트					

				BODY	도면참조 (지정 LPM) : 동화 / DW-H-3115	리바트			
			복도장	프레임	도면참조 (지정 PET) : 한화 / GY01DE3	리바트			
				도어	도면참조 (지정 PET) : 한화 / GY01DE3	리바트			
				오픈장	도면참조 (지정 PET) : 데코밸리 / D-1002	리바트			
				손잡이	도면참조 (지정 금속찬넬) : ASH-06번 컬러	리바트			
				BODY	도면참조 (지정 LPM) : 동화 / DW-H-3115	리바트			
		복도	복도팬트리	프레임	도면참조 (지정 PET) : LG / KAEL8-SS(무광)	리바트			
				도어	도면참조 (지정 PET) : LG / KAEL8-SS(무광)	리바트			
				손잡이	도면참조 (지정 금속찬넬) : ASH-06번 컬러	리바트			
				BODY	도면참조 (지정 LPM) : 동화 / DW-H-3115	리바트			
5.가구공사	일반가구	침실1/ 드레스룸	파우더장	프레임, FIX 판넬	도면참조 (지정 PET) : LG / KAEL8-SS(무광)	리바트	기본제공 최식		
				도어	도면참조 (지정 PET) : LG / KAEL8-SS(무광)	리바트			
				파우더 은경	도면참조 (3T은경)	리바트			
				손잡이	도면참조 (지정 금속찬넬) : ASH-06번 컬러	리바트			
				파우더장	BODY	도면참조 (지정 LPM) : 동화 / DW-H-3115	리바트		
			침실1/ 드레스룸	드레스룸 WIC	프레임	도면참조 (지정 PET) : LG / KAEL8-SS(무광)	리바트		
		도어			지정 PET : LG / KAEL8-SS(무광)+CNG/C200-4	리바트			
		손잡이			도면참조 (지정 금속찬넬) : ASH-06번 컬러	리바트			
	BODY	도면참조 (지정 LPM) : 동화 / DW-H-3115			리바트				
		시스템가구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선반	도면참조 (지정 LPM) : 동화 / DW-8W114(S/S)	동성사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선반	도면참조 (지정 LPM) : 동화 / DW-8W114(S/S)	동성사		
			세탁기 상부	시스템선반	선반	도면참조 (지정 LPM) : 동화 / DW-8W114(S/S)	동성사		
		주방가구	주방	상부장	프레임	도면참조 (지정 PET) : 한화 / BR003GXMT	리바트		
					도어	도면참조 (지정 PET) : 한화 / BR003GXMT	리바트		
					BODY	도면참조 (지정 LPM) : 동화 / DW-H-3103	리바트		
					하부장	프레임	도면참조 (지정 PET) : 한화 / BR003GXMT	리바트	
				도어		도면참조 (지정 PET) : 한화 / BR003GXMT	리바트		
				손잡이		도면참조 (지정 금속찬넬) : ASH-06번 컬러	리바트		
						BODY	도면참조 (지정 LPM) : 동화 / DW-H-3103	리바트	
					아일랜드	프레임	도면참조 (지정 PET) : 한화 / BR003GXMT	리바트	
				도어		도면참조 (지정 PET) : 한화 / BR003GXMT	리바트		
				손잡이		도면참조 (지정 금속찬넬) : ASH-06번 컬러	리바트		
				BODY		도면참조 (지정 LPM) : 동화 / DW-H-3103	리바트		
				장식장	프레임	도면참조 (지정 LPM) : LG / KAEL8-SS(무광)	리바트		
			상부장		도면참조 (지정 LPM) : LG / KAEL8-SS(무광)	리바트			

			오픈장	도면참조 (지정 LPM) : LG / KAEL8-SS(무광)	리바트		
			하부장	도면참조 (지정 LPM) : LG / KAEL8-SS(무광)	리바트		
			도어	도면참조 (지정 LPM) : LG / KAEL8-SS(무광)	리바트		
			손잡이	도면참조 (지정 금속찬넬) : ASH-06번 컬러	리바트		
			BODY	도면참조 (지정 LPM) : 동화 / DW-H-3103	리바트		
	욕실장	욕실1(공용욕실) 욕실2(부부욕실)	슬라이딩도어	도면참조 (은경 + AL프레임)	그라스텍		
			BODY	도면참조 (전사 : KCC/YM403-J3T 컬러기준 + 옛지마감캡)	그라스텍		
			세면대 하부장	도면참조 (전사 : LG / KAEL8-SS(무광) 컬러기준)	그라스텍		
	샤워부스	욕실2(부부욕실)	샤워부스	도면참조 (샤워부스용 알루미늄 후레임) / 강화접합유리	그라스텍		
	6.설비공사	가전기기	주방	가스쿡탑(3구)	GC-3605SASH	하츠	기본제공시
전기쿡탑				ERA-B373E	SK매직	확장시 제공	
하이브리드쿡탑				GRA-BH301H	SK매직	확장시 제공	
기능성오븐				HSB-N361B	삼성전자	확장시 제공	
			발코니1	전기식빨래건조대	AL4000FS	웰테크	발코니확장시
욕실		욕실1(공용욕실)	욕조	세라믹(1500 x 750), 수납에이프런(1개소)출결이배수구	바체		
			세면기	CL-463D	대림B&CO		
			양변기	DST-650, 비데일체형	대림B&CO		
			세면기수전	#71160	Hansgrohe		
			욕조수전	#71403	Hansgrohe		
			슬라이딩바	#26654400	Hansgrohe		
			수건걸이	KI 3701	국일금속		
			휴지걸이	KC 803T	국일금속		
			청소도구	KI S 14-1	국일금속		
			코너선반	KC 305-4B	국일금속		
		수건선반	KS 04	국일금속			
		욕실2(부부욕실)	샤워부스	(건축분)	-		
			세면기	CL-463D	대림B&CO		
			양변기	DST-650, 비데일체형	대림B&CO		
			세면기수전	#71160	Hansgrohe		
샤워수전	#71602		Hansgrohe				
	욕실2(부부욕실)	슬라이딩바	#26654400	Hansgrohe			
양변기 청소건		YJ323-A740	워터웍스유진				
수건걸이		KI 3701	국일금속				
휴지걸이		KC 803T	국일금속				
청소도구		KI S 14-1	국일금속				
		코너선반(상부)	KC 305B	국일금속			

			코너선반(하부)	KC 305-4B	국일금속	
	수전류	공통	싱크수전	KITCHEN MIXER#72813	Hansgrohe	
6.설비공사	수전류	공통	세탁기수전	YJ294 (온, 냉)	위터웍스유진	
			발코니수전	YJ594-A679 냉수2구+스프레이건	위터웍스유진	
			입식빨래볼 수전	YJ4535	위터웍스유진	
			욕실휀(M.D일체형)	공용욕실 : 고정압 / 부부욕실:고정압	힘펠	
	기타	특화ITEM	열교환환기설비	전열교환기(BY-PASS+Pre Heater)	에어패스	
	기타	특화ITEM	실별 온도제어	디지털 실별 온도제어 (거실:전기통합형온도+환기,침실:전기통합형온도조절기)	세익	
			렌지후드 (M.D일체형)	HCR-902e, MD일체형	한일	
			싱크절수밸브	푼터치 전자식	자타	
			음식물탈수기	일반 음식물 탈수기(STS)	한일전기	
			자동식소화기	전자식	한국소방	
7.전기공사	조명	현관	현관센서등	K-8-SS	알토	
			현관창고 센서등	D-SS	알토	
		거실	거실 천장직부등	84L 84LA	소룩스	
			복도 매입등	D-MR	알토	
		주방	주방천장 매입등	K-10	알토	
			식탁 펜던트	84P 1안	소룩스	
			아일랜드 식탁등	D1	알토	
			주방창고매입등	D-SS	알토	
		침실1 (안방)	안방천장 직부등	84RL	소룩스	
		파우더룸,드레스룸	드레스룸 센서등	D-SS	알토	
		침실2	침실2천장 직부등	84RM	소룩스	
		침실3	침실3천장 직부등	84RM	소룩스	
		욕실1(공용욕실)	욕조 상부직부등	D1A	알토	
			욕실거울 상부매입등	B1	알토	
	욕실2(부부욕실)	샤워부스 상부매입등	D1A	알토		
		욕실거울 상부매입등	B1	알토		
	발코니1, 실외기실	직부 벽등	S2	알토		
		욕외테라스	직부 벽등	XW5	알토	
	도어부속물	현관	디지털도어락	X110-F	현대통신	
	배선기구	거실	네트워크 스위치	홈네트워크 연동 조명제어 가능 (색상: 샴페인골드)	현대통신	
			스위치,콘센트	일반형 (색상 : 샴페인골드)	제일전기	
		전체	통합콘트롤러 및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일반형 (색상 : 샴페인골드)	제일전기	
현관			일괄소등스위치	생활정보기(날씨, 일괄소등, 가스차단, EV쿨)	제일전기	
홈오토메이션	거실	홈오토메이션	HDHN-1000	현대통신		
		주방 상부장	홈네트워크 연동	홈네트워크 주방거치대	현대통신	
	침실1	음성인식	빌트인 음성인식 스피커	현대오토에버		
	주방	스마트 주방TV	DM-5102X(10")	동영미디어		